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 12. 18.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11월 12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2015.12.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갑수)

가. 제안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우리구 자치법규(조례) 중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별지서식에 대해 일괄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토록 허용하고 있는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기영)

-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제 정비하려는 것임.
- 주민등록번호를 처리¹⁾하려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정되므로, 현행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를 정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하는 것은 상위법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적절한 조치로 보임.
- 또한, 본 조례는 1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개정 취지가 같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동일한 내용이므로 입법기술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1)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95 호
----------	--------

제출연월일 : 2015.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우리구 자치법규(조례) 중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별지서식에 대해 일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괄 개정대상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총 17개 조례

나. 주요 개정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토록 허용하고 있는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 “생년월일”로 개정에 따른 서식에 불필요한 문구(작성방법) 삭제 등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사항

- (1) 규제심사 : 심사실시(대상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원안 동의)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원안 동의)

라. 기타 사항

- (1) 입법예고(2015.9.17. ~ 10.07.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의 신고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의 신고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피신고자(신고대상)란 중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제 제2호서식의 수상자 인적사항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작성요령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작성요령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란과 수임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작성요령란의 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란과 수임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작성요령란의 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작성요령란의 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작성요령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작성요령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새긴사람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적사항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신생아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민원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란과 신생아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인란과 신생아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의 신청인란과 부양대상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의무자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생년월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처분기관 보관용과 피처분자 통지용의 위반행위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의무자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의무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소유자인적사항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조례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1)성 명	(한 자) (원 명)									
(2)생년월일						(3)군번(군인의경우)				
(4)본적(국적)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위						(9)등급(직급·계급)			(10)근무기간 (수공기간)	
(11)공적요지(50자내외)						(12)공적분야 코드			-	
(13)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8)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1202-2(2-1)일(1)

190mm×268mm 신문용지 54g/m²

1984. 1.26 승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연 월 일	(20)이 력	(21)연 월 일	(22)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연 월 일	(24)내 용	(25)연 월 일	(26)내 용

(27)공 적 사 항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주요학력 및 경력

⑲ 년월일	⑳ 이 력	㉑ 년월일	㉒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㉓ 년월일	㉔ 내 용	㉕ 년월일	㉖ 내 용

㉗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